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8. 17. 대전광역시장
2. 건명 :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따로붙임
4. 검토의견 : 따로붙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9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연정수

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「자동차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나. 자동차폐차업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7조).

## 3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자동차관리법」과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, 상위법에 규정됨으로써 내용이 중복된 조문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임.

## **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**

- 안 제1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약칭을 정비하고,
- 안 제4조는 약칭 정비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매매업자의 보증금 관련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제3호를 삭제 하였으며,
- 안 제5조 하자보증금의 예치 관련 사항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신설 규정됨으로써 삭제 정비하였음.
- 안 제6조와 제7조 그리고 [별표 1] 과 [별표 2] 는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 하였음.

## **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**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 하고, 상위법에 새롭게 신설되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